#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18. 8. 29.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

**1. 제 출 자**: 성동구청장

## 2. 제안이유

생활체육시설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사용료 할인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

# 3. 주요내용

- 가. 생활체육시설 예약취소가 빈번하여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, 예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약금 인상 및 취소시점에 따라 차등화 함 (안 제8조제3항)
- 나. 출산장려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4~6급 장애인을 감면대상으로 추가 (안 별표 2)
- 다. 문화강좌실(강의실) 사용료 기준 마련(안 별표 3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6조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8조 및 제10조,

「장애인복지법」제30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8. 7. 11. ~ 2018. 7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와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- 먼저, 안 제8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[별표2]프로그램 사용료와 [별표3]시설사용료를 구분하고, 사용료 반환 기준을 사용허가 취소 요청 시기에 따라 차등 규정하였는데, 이는 이용자의 단순 변심 등에 따른 잦은 취소를 억제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책임감은 높임으로써 원활한 시설 관리·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짐

- 또한,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및 확대와 체육시설 사용 대상에 '문화 강좌실'을 추가함으로써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와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
- 다만, '문화강좌실' 시설 사용료는 추후 잦은 사용료 변경에 따른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,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대관 대상 체육 시설 확대가 재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,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